

노동정책연구

2003. 제3권 제1호 pp.171~195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한국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

유길상*

본 논문은 한국에서 누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남성에 비하여 여성, 청년층에 비하여 중장년층의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보다 전문대와 대학 졸업자인 고학력자가, 단순노무직 종사자보다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와 사무직원이, 저임금자보다 고임금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한 임시·일용근로자에 비하여 퇴직금을 받고 퇴직한 정규직 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기재취직수당제도의 경우 여성에 비하여 남성이, 연령계층별로는 젊은 연령계층이, 학력별로는 고학력자의 수급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특별연장급여의 경우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이, 30세 미만의 연령계층에 비하여 30대 이상의 연령계층이, 고졸자에 비해 초·중졸 이하의 저학력자가, 그리고 이직 전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수급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실업급여, 구직급여, 조기재취직수당,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 특별연장급여 수급자

I. 연구의 목적

1995년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이래 실업급여제도는 가장 중요한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런데 실업발생의 위험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계층, 즉 청년층, 중고령자, 저학력·저숙련계층, 여성, 영세기업의 근로자, 건설업과 같은 고용불안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구조조정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평균 수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이

투고일: 2003년 2월 3일, 심사의뢰일: 2월 14일, 심사완료일: 2월 19일

*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ksyu@kli.re.kr)

일반적이다(Johanson and Layard, 1986). 실업의 위험이 높은 한계계층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확률도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이러한 추론이 통계적으로 입증되는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인 고용보험제도 역시 실업의 위험이 낮은 집단으로부터 실업의 위험이 높은 집단으로의 소득재분배를 부수적인 효과로 기대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실업을 당하지 않은 피보험자와 실업은 되었으나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비수급자¹⁾에 비하여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성, 연령, 학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한계 근로자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추론이 우리나라에서 맞는 것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누가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는가, 실업급여 수급자는 취약근로계층인가 아니면 고임금계층인가 등의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의 개요와 실적을 간단히 살펴본 다음 누가 실업급여를 받을 확률이 높은가를 성, 연령, 학력수준, 임금수준, 이직사유, 이직 전 재취업을 위한 준비 여부, 가구주 여부, 근속기간, 직종, 업종 등의 여러 측면에서 실증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분석 자료

실업급여제도의 실적과 실업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의 특성에 대해서는 주로 고용

1) 본 연구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라 함은 이직일 이전 18월의 기간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적용사업에 고용되어 있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1차적인 요건은 충족하고 실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은 사람을 의미하고, ‘실업급여 비수급자’ 또는 ‘비수급자’라 함은 이직일 이전 18월의 기간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적용사업에 고용되어 있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1차적인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실업급여 비수급자’ 또는 ‘비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직일 이전 18월의 기간중 18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적용사업에 고용되어 있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1차적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에 비하여 피보험고용기간 자체가 달라 본 연구의 ‘실업급여 비수급자’ 또는 ‘비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보험 DB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고용보험 DB의 자료에는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번호, 성, 연령, 학력, 채용경로, 피보험자격의 취득일과 상실일 및 상실 사유, 피보험자격 취득시 및 이직 당시의 임금, 산업, 직종, 사업장 규모, 실업급여를 받은 금액과 기간, 퇴직금 수령 금액 등의 피보험자 및 사업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 실업급여 지급 실적에 대한 분석은 고용보험 DB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런데 고용보험 DB에는 이직 전의 임금, 이직 전 재취업 준비 여부 등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의 구체적 차이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정보가 없다. 이러한 고용보험 DB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전국 대표성을 갖는 표본을 추출해 추적조사를 실시해야만 한다. 다행히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에 대한 추적조사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해 이루어진 바가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2001) 자료도 분석에 활용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는 2000년 4~6월의 기간중에 이직으로 인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실업급여 수급자 1,002명과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었으나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비수급자 1,010명을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아주 늦게 신청한 사람이라도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소진하였을 시점인 2001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2001년 9월 3일부터 10월 27일의 기간 동안 추적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의 표본은 고용보험 DB에서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하되 지역별·성별 비례할당 추출이 된 것이다. 이직자에 대해 이직 후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응답하게 하는 추적조사의 특성상 주소와 전화번호의 변경자가 많고 응답을 거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실제 조사 대상인원의 10배를 1차 추출한 후 실제 조사과정에서는 성, 연령계층, 지역별로 모집단 분포를 감안하여 2차, 3차 추출이 되었다. 2000년 4~6월의 기간중 이직일 이전 180일 이상의 피보험기간을 충족하고 고용보험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람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율은 약 10%이었다. 따라서 수급자에 비해 비수급자가 훨씬 많은 모집단의 특성상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비율을 맞추어 표본을 추출하면 수급자 표본이 너무 작아져 수급자에 대한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얻기 힘들게 되므로 수급자를 비수급자에 비해 9배 과다 추출하여 각각 1,000명 내외를 조사하되 추적조사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비수급자를 수급자에 비하여 9배의 가중치(weight)를 주어 분석하였다. 조사방법은 표본으로 선정된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를 면접원이 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개별 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Ⅲ.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개요

1. 구직급여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대별된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핵심적 제도로서 이직일 이전 18월간 피보험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가 고용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있을 경우에 지급된다.

구직급여의 수준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이고 여기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다.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은 최초에는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1998년 2월 20일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일액의 70%로 규정되었다가 1999년 12월 31일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다시 90%로 상향조정되었다.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초기에는 35천 원으로 설정되었으나 외환위기에 따른 임금수준이 하락을 반영하여 1999년 2월 1일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1999년 7월부터 30천 원으로 낮추어졌다가 외환위기 극복에 따른 임금인상을 반영하여 2000년 12월 30일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2001년 1월부터 다시 35천 원으로 인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구직급여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급자격자의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90일에서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와 동일한 금액의 상병급여를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소정급여일수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제49조 제1항).

현행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90~240일로 규정하면서도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는 연장급여제도(extended benefits)를 두고 있다. 현행 고용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연장급여제도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훈련연장급여제도는 수급자격자가 특별한 기능이 없고 이직 전 경력, 기능, 자격, 연령, 지역노동시장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재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방노동관서 장의 훈련지시에 의하여 직업

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2년까지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법 제42조). 훈련연장급여제도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이다.

개별연장급여제도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급여기초임금일액,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각각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하인 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하였거나 받고 있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구직급여일액의 70%(최저임금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를 6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법 제42조의 2 및 시행령 제52조의 2). 개별연장급여제도는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에서 일종의 실업부조(unemployment assistance)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특별연장급여제도는 실업의 급증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재취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에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에 한해 구직급여일액의 70%를 60일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로서 외환위기로 인하여 고실업이 사회문제가 되었던 1998년에 도입되어 1998년 7월 15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었다.

〈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주 :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취직촉진수당

취직촉진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직급여에 부가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로 구성되어 있다.

조기재취직수당은 실업급여 지급으로 인한 실업의 장기화를 막고 적극적인 구직활동

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 경과 후 구직급여의 미지급 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 잔여기간 중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2분의 1이 일시불로 지급된다(고용보험법 제50조, 시행령 제61조 내지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59조의 2).

직업능력개발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자에 대하여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하여 1일 5천 원을 지급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수강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고용보험법 제51조 및 시행령 제64조).

광역구직활동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 경과 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곳의 직장에 구직활동을 하게 될 때 소요비용을 지급하여 광역에 걸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고용보험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65조), 이주비는 취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급된다(고용보험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66조).

구직급여는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는 실업급여의 핵심으로서 보통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를 말하며, 취직촉진수당은 구직급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부가적 성격을 띠고 있다.

3. 실업급여 지급 실적

1996년 7월 1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실업급여는 1997년까지는 실업률이 2%대를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18월의 기준기간중 12월 이상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재직한 후 이직하여야 하는 비교적 엄격했던 실업급여의 신청요건의 충족, 제도 시행 초기의 실업급여에 대한 홍보 미흡, 3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로 국한되어 있던 실업급여의 적용범위 등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수가 매우 적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 실인원(實人員)이 56천여 명에 불과하였고 실업급여 지급액도 787억 원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의 급증, 실업급여 적용범위의 확대,²⁾ 실업급여 신청요건의 완화,³⁾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확

2) 실업급여 적용범위는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의 근로자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1998년 1월 1일부터는 10인 이상 사업의 근로자로, 1998년 3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의 근로자로, 1998년 10월 1일부터는 1인 이상 사업의 근로자로 확대되었다.

3) 외환위기 이후의 고실업에 대응하여 고용보험 신규적용 피보험자들의 실업시 보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1998년 2월 20일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1998년 3월 1일부터 기존의 기준기간(18개월)과 피보험단위기간(12개월)을 각각 12개월과 6개월로 200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대,4) 특별연장급여제도의 실시5) 등으로 인해 1998년의 실업급여 수급자 실인원이 431천 명, 1999년에는 483천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후 2000년에는 실업률이 다시 하락함에 따라 330천 명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수가 감소하였다가 2001년에는 다시 423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1998년에는 7,992억 원, 1999년에는 9,362억 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00년에는 4,708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2001년에는 8,451억 원으로 다시 크게 증가하였다. 2001년에 실업률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자수 및 지급액이 급증한 것은 2001년의 경기침체 영향으로 비자발적 이직자 비중의 증가로 인한 신규수급자의 증가, 임금인상과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의 인상으로 인한 1인당 평균 구직급여일액의 증가, 1998년 신규적용자의 소정급여일수 30일 증가로 인한 평균구직급여 수급기간의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6)

실업급여의 수급자수 및 지급액을 내역별로 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직급여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수 및 실업급여 지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제1차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특징 중의 하나는 취직촉진수당제도가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직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기재취직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취직촉진수당 일부는 그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급여 연장제도의 수급자수 및 지급 실적을 보면 고실업시기에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특별연장급여를 제외한 훈련연장급여제도와 개별연장급여제도는 지급 실적이 극히 미약하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훈련연장급여제도와 개별연장급여제도의 수급자수와 지급액은 극히 미약하다. 특히 훈련연장급여제도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조

하였으며, 1999년 12월 31일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서 다시 기준기간과 피보험기간을 2001년 1월 1일부터 각각 18개월과 180일로 추가적으로 완화하였다.

- 4) 외환위기 이후의 고실업에 직면하여 1998년 2월 20일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5세 미만인 자를 별도로 구분하여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피보험기간에 따라 30~120일로 규정하던 것을 삭제하여 25세 미만인 자도 30세 미만의 자로 통합하여 소정급여일수를 60~150일로 조정하여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 1998년 3월 1일부터 수급자격요건이 완화되면서 피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이직자에 대해서 이직당시 연령과 관계없이 60일의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실업급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1999년 12월 31일 고용보험법 개정에서는 모든 수급자격자의 소정급여일수를 30일 확대하여 종전의 60~210일을 90~240일로 조정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5) 외환위기 이후의 고실업에 직면하여 고실업시기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60일 연장할 수 있는 특별연장급여제도를 1998년 2월 20일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고 1998년 7월부터 1999년 12월의 기간 동안 특별연장급여제도를 실시하였다.
- 6)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용보험연구센터, 『고용보험동향』, 2002년 봄호.

<표 2> 실업급여 내역별 수급자수 및 지급액 추이

(단위 : 명, 백만원)

		전 체	구직급여	취직촉진수당					상병급여
				소계	조기취직수당	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	
1996	수급자수	8,063	7,192	832	815	14	-	3	39
	지급액	10,459	9,958	473	469	4.0	-	0.1	28
1997	수급자수	55,774	50,964	4,542	4,487	51	2	2	268
	지급액	78,733	75,943	2,578	2,558	19.4	0.1	0.1	212
1998	수급자수	431,237	412,600	17,361	17,318	28	10	5	1,276
	지급액	799,155	782,865	15,274	15,257	15.1	1.6	0.1	1,016
1999	수급자수	483,238	462,635	19,310	19,243	11	46	10	1,293
	지급액	936,185	911,308	22,237	22,222	5.0	9.1	0.4	2,640
2000	수급자수	330,353	303,631	24,763	24,712	2	38	11	1,959
	지급액	470,793	443,545	24,884	24,877	0.4	6.7	0.2	2,363
2001	수급자수	422,858	374,286	44,180	44,001	8	163	8	4,392
	지급액	845,110	783,861	57,150	57,120	2.2	28.1	0.2	4,099

주 : 1) 1996년도의 수치는 자료의 한계 때문에 1996년 12월 31일 현재의 월 통계치로 기재.

2) 수급자수는 당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은 실인원임.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기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1996~2001년까지 6년 동안 71명에 불과하여 훈련연장급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1998년 7월 15일부터 1999년 12월말까지 고실업시기에 시행된 특별연장급여의 수급자는 1998년 하반기에 186천 명, 1999년에는 361천 명으로서 고실업시기에 실업급여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직급여일액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한액과 하한액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은 임금대체율이 50%이지만, 이직 전 임금수준이 매우 낮아 구직급여일액이 하한액 미만인 사람들의 임금대체율은 50%를 넘을 것이며,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람들의 임금대체율은 50%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표 4>는 1996년 이후 2001년까지의 실제 임금대체율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직급여의 실제 임금대체율은 43~45%선에서 소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급 초기에는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많아 임금대체율이 43.2%였지만 1998년에 실업급여의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이들 신규적용사업장에서 이직자들이 본격적으로 이직하기 시작한 1999년 상반기의 임금대체율은 44.9%로 상승하였다. 1999년 하반기 이직자부터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이 30천 원으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상한액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늘어나 다시 43.5%로 하락하였다. 2001년 1월

부터 상한액이 다시 35천 원으로 환원되면서 임금대체율이 45.5%로 상승되었다. 만약 상한액이 30천 원이었다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2001년의 임금대체율은 43.3%로 전년도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3〉 구직급여 연장제도의 연도별 수급자 및 지급액 추이

(단위 : 명, 천원)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훈련 연장급여	수급자수	7	31	17	3	2	11
	지급액	7,000	37,000	105,000	45,000	2,200	5,600
개별 연장급여	수급자수	-	3	4	496	1,011	676
	지급액	-	1,000	2,000	198,000	620,000	482,000
특별 연장급여	수급자수	-	-	186,084	361,041	-	-
	지급액	-	-	82,525,000	215,929,000	-	-

자료 : 고용보험 DB.

〈표 4〉 구직급여의 임금대체율 추이

(단위 : 원, %)

	평균 구직급여일액 (A)	평균 임금일액 (B)	임금대체율 (A/B)
1996	25,446	-	-
1997	24,945	57,808	43.2
1998	24,396	56,061	43.5
1999	21,611	48,179	44.9
1999 상반기	22,885	51,312	44.6
1999 하반기	19,972	44,151	45.2
2000	21,129	48,627	43.5
2001	23,411	51,439	45.5
	(22,266)		(43.3)

주 : 1) 1999년 6월 30일까지의 이직자의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은 35,000원이었고, 1999년 7월 1일부터 2000년 말 이직자는 30,000원, 2001년 이직자부터 다시 35,000원으로 조정됨.

2) () 안의 숫자는 2001년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이 2000년과 같이 30,000원이라는 가정하에 재산정한 구직급여일액과 임금대체율.

자료 : 고용보험 DB.

IV.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

1. 구직급여 수급자의 특성

누가 구직급여를 받는가? 즉 사회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중·고령자, 중졸 이하의 저학력계층, 저숙련 및 단순노무직 근로자, 저임금근로자, 영세사업장 및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등이 주로 구직급여를 받는가, 아니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 우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남성, 청·장년층, 고학력자 등이 주로 구직급여를 받는가의 여부를 확인해 보자. 구직급여가 취약계층의 보호에 충실한가를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1> 사회취약계층의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즉 사회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중·고령자, 중졸 이하의 저학력계층, 저숙련 및 단순노무직 근로자, 저임금근로자 등의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남성, 청·장년층, 고학력자, 고임금근로자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한편 이직하기 전에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경향이 강한 자발적 이직자에 비하여 회사의 경영사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사람은 이직 전에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직을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직 전에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한 사람일수록 실업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취업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이직한 사람일수록 구직급여 수급확률이 낮아질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2> 이직 전에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이직한 사람은 이직 전에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이직한 사람에 비해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더 낮을 것이다.

이상의 가설을 통계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구직급여 수급 여부에 대한 로짓분석을 하였다.

<표 5>는 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어떤 사람들이 구직급여를 받는지를 로짓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종속변수는 구직급여를 받았으면 1, 구직급여를 받지 않았으면 0으로 하였다. <표 5>의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위에서 설정한 가설들이 우리나라에서 타당한 주장인지 검정해 보기로 한다.

먼저 성별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구직급여 수급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계층별로는 30대 이하의 연령계층에 비해 40대와 50대 이상의 연령계층의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동시장에서 상대적 한계계층인 여성과 중·고령자가 남성 및 청년층에 비해 구직급여의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과 연령 측면에서는 <가설 1>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력별로는 고졸자에 비해 대학원졸 이상의 학력자의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은 <가설 1>에서 예상한 대로 더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가설 1>과는 반대로 고졸자에 비해 중졸 이하의 저학력계층이 오히려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전문대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고졸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1>과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직종별로는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와 사무직의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은 전문직 및 기술·기능직 근로자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의 경우에는 전문직 및 기술·기능직 근로자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전문직 및 기술·기능직 근로자에 비하여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1>과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직 전 사업장의 규모별로는 100~299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10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피보험자가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더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00~299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은 100~299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직 전 임금수준과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을 보면 이직 전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구

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1>에서 예상한 ‘임금수준이 낮은 피보험자일수록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근로자가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비하여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더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산업별로는 광공업, 전기·가스·수도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의 종사자에 비하여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의 경우에만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림어업과 건설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광공업, 전기·가스·수도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의 종사자에 비하여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은 높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 광공업, 전기·가스·수도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의 종사자에 비하여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사유별로는 자발적 이직자의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자발적 이직자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회귀계수값이 가장 높은 변수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직 전 재취업을 위한 준비 여부별로 보면 <가설 2>에서 예상한 대로 재취업 준비를 한 이직자의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한 이직자의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 2>를 지지하였다.

가구주 여부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을 보면 가구주의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가구주가 아닌 사람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는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피보험자의 이직 전 직장에서의 근속기간별로는 이직 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이 길수록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할 당시 퇴직금 수령 여부별로 보면 퇴직금을 수령한 이직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이직자에 비하여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성별로는 여성이, 연령계층별로는 30대 이하의 연령계층에 비하여 40대 이상의 연령계층이, 직종별로는 전문직종 및 숙련기능원에 비해서는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와 사무직원이,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가, 이직 전 임금수준별로는 임금이 높을수록, 고용형태별로는 임시·일용근로자에 비하여 정규직 근로자가, 이직사유별로는 자발적 이직자에 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자가, 근속기간별로는 장기근속자일수록, 퇴직금 수령 여부별로는 퇴직금 수령자가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높은 집단임이 밝혀졌다.

<표 5> 구직급여 수급자의 특성에 대한 로짓분석(구직급여 수급 = 1, 비수급 = 0)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수준	Exp(B)
절편	-5.416***	0.529	0.000	0.004
여성	0.529***	0.122	0.000	1.697
연령(30대 이하)			0.000	
40대	0.475***	0.112	0.000	1.607
50대 이상	1.221***	0.131	0.000	3.390
학력(고졸)			0.000	
초중졸 이하	-0.253**	0.126	0.044	0.776
전문대, 대졸	0.464***	0.092	0.000	1.590
대학원 이상	-0.243	0.397	0.540	0.784
이직 전 직종(전문직종 및 숙련기능원)			0.000	
고위임직원 등	0.965***	0.208	0.000	2.625
사무직	0.337***	0.094	0.000	1.400
농어업 숙련근로자	0.709	0.492	0.149	2.032
단순노무직	-0.737***	0.117	0.000	0.478
이직 전 산업(광공업 등)			0.003	
농수림어업	0.453	0.542	0.403	1.574
건설업	0.117	0.146	0.421	1.124
금융 및 보험	0.598***	0.181	0.001	1.819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151	0.102	0.138	0.860
이직 전 기업규모(100~299인)			0.006	
10인 미만	-0.330**	0.135	0.014	0.719
10~99인	-0.320**	0.125	0.011	0.726
300~999인	-0.002	0.161	0.992	0.998
1,000인 이상	-0.565***	0.196	0.004	0.568
건설공사	-0.047	0.257	0.855	0.954
이직 전 임금	0.128	0.112	0.256	1.136
정규직	0.529***	0.115	0.000	1.696
비자발적 이직	2.140***	0.090	0.000	8.497
이직 전 재취업 준비	-1.028***	0.122	0.000	0.358
가구주	-0.068	0.121	0.573	0.934
근속기간(월)	0.004***	0.001	0.000	1.004
퇴직금수령	1.066***	0.088	0.000	2.903
N	1,986			
-2Log Likelihood	4731.927			
R ²	0.158			

주 : 1) *** 는 1%, ** 는 5%, *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

2)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표본은 2,012명이나, 일부 변수들의 결측치(missing)로 인하여 관찰치는 1,986명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2.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의 특성

누가 조기재취직수당을 받는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어 조기재취직수당이 없더라도 조기에 재취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남성, 청·장년층, 고학력자가 주로 받는가, 아니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어 조기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성, 고연령계층, 저학력자가 조기재취직수당을 주로 받는가를 통계적으로 검정해 보자.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검정하기로 한다.

<가설 3> 노동시장에서 우위에 있는 계층이 한계계층에 비하여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즉 성별로는 남성이, 연령계층별로는 청·장년층이,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에 대한 검정을 위해 2001년도 고용보험 DB 자료를 이용하여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에 대하여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2001) 자료에서는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가 88명에 불과하여 분석에 사용할 수 없었다. <표 6>의 분석 결과는 위에서 설정한 가설에 대하여 관련된 변수를 설정하여 분석한 것으로서 모형 II는 모형 I에 비하여 ‘연령*이직 전 임금’의 변수를 추가한 것이며 모형 III은 모형 I에 비하여 소정급여일수의 변수를 추가한 것이다. <표 7>은 <표 6>의 모형 III을 다시 성과 학력에 대해 통제한 것으로서 첫번째 모형은 실업급여 수급자 중 남성으로서 30~39세 연령계층만을 추출하여 이들의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여부를 분석한 것이며, 두번째 모형은 실업급여 수급자 중 남성으로서 30~39세 연령계층 중 다시 고졸학력자만을 추출하여 이들의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여부를 분석한 것이다.

<표 6>에 의하면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이 타당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표 5>에서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은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더 높았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로서 매우 흥미 있는 사실이다.

연령계층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고연령계층의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

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청장년층의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도 통계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는 <표 5>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서 <표 5>와 <표 6>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연령이 많아질수록 구직급여의 수급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조기재취직수당을 받고 조기에 재취업할 가능성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하여 초·중졸 이하의 저학력자는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전문대 이상의 졸업자의 경우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학력별로는 저학력자에 비하여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서 이러한 결과는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을 확률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7>에서 성과 연령만을 통제하여 남성으로서 30~39세 연령계층만을 추출하여 분석한 모형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노동시장에서 우위에 있는 계층이 한계계층에 비하여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 3>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성별로는 남성이, 연령계층별로는 청·장년층이,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직종별로 보면 서비스근로자 및 상품·시장판매근로자에 비하여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고 사무직과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7>에서 성과 연령과 학력을 통제하여 남성으로서 30~39세 연령계층이고 고졸의 학력을 가진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서비스근로자 및 상품·시장판매근로자에 비하여 회귀계수의 값이 커져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의 경우에도 <표 6>에서는 서비스근로자 및 상품·시장판매근로자에 비하여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 7>에서 성과 연령과 학력을 통제하여 남성으로서 30~39세 연령계층이고 고졸의 학력을 가진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오히려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경우 <표 6>의 모형 I과 모형 II에서는 서비스근로자 및 상품·시장판매근로자에 비하여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이 상대

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 7>에서 성과 연령과 학력을 통제하여 남성으로서 30~39세 연령계층이고 고졸의 학력을 가진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결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운수창고통신업 등에 비하여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에 종사했던 구직급여 수급자가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상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규모별로는 10~99인 사업장에 비하여 10인 미만 사업장과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했던 구직급여 수급 자격자의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과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 가능성을 보면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긴 하지만 소숫점 셋째자리의 값도 영(zero)이 나올 정도로 극히 적은 양(positive)의 값을 가져 아주 미미한 효과만이 있었다.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데 까지 소요된 기간과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 가능성과의 관계를 보면 실업급여의 신청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 가능성은 낮아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전의 임금수준과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 가능성을 살펴보면 <표 6>의 모형 I 과 모형 II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형 III 과 <표 7>에서 성, 연령, 학력을 통제한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형 II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연령과 이직 전 임금을 동시에 고려하여 ‘연령*이직 전 임금’이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연령도 많고 이직 전 임금도 높았던 사람들의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지며, 연령도 적고 이직 전 임금도 낮았던 사람들의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모형 III에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별로 살펴보면 소정급여일수가 90일인 집단에 비하여 소정급여일수가 120일, 150일, 180일, 210일인 집단의 조기재취직수당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값을 보면 소정급여일수가 길어질수록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 가능성이 높아지나 소정급여일수가 210일인 집단은 180일인 집단보다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 가능성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의 특성에 대한 로짓분석 I (2001년)

	모형I		모형II		모형III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절편	-0.871***	0.241	-7.239***	0.882	-0.329	0.238
남성	0.650***	0.019	0.688***	0.018	0.629***	0.019
연령(30세 미만)			1.283***	0.183	-0.223***	0.009
30대	-0.036*	0.021				
40대	-0.129***	0.020				
50세 이상	-0.406***	0.024				
학력(고졸)						
초중졸 이하	-0.250***	0.027	-0.282***	0.027	-0.269***	0.027
전문대, 대졸	0.211***	0.017	0.207***	0.017	0.217***	0.017
대학원 이상	0.310***	0.064	0.320***	0.063	0.304***	0.064
이직 전 직종(서비스근로자등)						
기술공 및 준전문가	0.131***	0.027	0.126***	0.027	0.135***	0.027
사무직	-0.060***	0.021	-0.071***	0.021	-0.080***	0.02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0.000	0.025	-0.008	0.025	0.007	0.025
단순노무직	-0.076***	0.027	-0.089***	0.027	-0.036	0.027
이직 전 산업(운수창고·통신업 등)						
제조업	0.275***	0.020	0.280***	0.020	0.233***	0.021
건설업	0.454***	0.028	0.459***	0.028	0.431***	0.028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0.115***	0.028	0.107***	0.028	0.098***	0.028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402***	0.023	0.373***	0.023	0.391***	0.023
이직전 기업규모(10~99인)						
10인 미만	-0.257***	0.018	-0.259***	0.018	-0.181***	0.018
10~299인	0.076***	0.023	0.082***	0.023	0.032	0.024
300~999인	-0.145***	0.028	-0.140***	0.029	-0.207***	0.029
1,000인 이상	-0.281***	0.028	-0.274***	0.028	-0.361***	0.029
비자발적 이직	0.360***	0.038	0.364***	0.038	0.397***	0.038
실업급여 신청 소요기간(1주 이내)						
1주~2주 이내	-0.040	0.031	-0.045	0.031	-0.042	0.031
2주~1월 이내	-0.249***	0.029	-0.256***	0.029	-0.252***	0.029
1월~2월 이내	-0.488***	0.030	-0.494***	0.030	-0.472***	0.030
2월 이상	-0.843***	0.032	-0.847***	0.032	-0.797***	0.032
근속기간(월)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이직 전 임금(로그)	0.028	0.017	0.523***	0.065	0.025	0.017
연령*이직 전 임금			-0.103***	0.013		
소정급여일수(90일)						
120일					0.341***	0.021
150일					0.533***	0.025
180일					0.796***	0.028
210일					0.710***	0.043
N	84,172		84,172		84,172	
-2Log Likelihood	109007.09		108986.25		108160.10	
R ²	0.083		0.083		0.092	

주 :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 고용보험 DB.

<표 7>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의 특성에 대한 로짓분석 II : 성·연령·학력 통제(2001년)

	남성·30~39세		남성·30~39세·고졸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절편	-1.250***	0.455	-0.580	0.726
학력(고졸)				
초중졸 이하	-0.112	0.093		
전문대, 대졸	0.279***	0.029		
대학원 이상	0.469***	0.091		
직종(기타)				
기술공 및 준전문가	0.163***	0.043	0.269***	0.068
사무직	0.026	0.035	0.151**	0.05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0.004	0.042	0.104*	0.056
단순노무직	-0.096	0.059	-0.060	0.074
산업(기타)				
제조업	0.279***	0.039	0.206***	0.057
건설업	0.635***	0.048	0.320***	0.078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0.178***	0.050	0.145**	0.07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310***	0.045	0.282***	0.072
규모(10~99인)				
10인 미만	-0.214***	0.032	-0.230***	0.048
10~299인	0.060	0.045	0.114*	0.063
300~999인	-0.208***	0.051	-0.360***	0.077
1,000인 이상	-0.308***	0.050	-0.540***	0.082
비자발적 이직	0.320***	0.081	0.447***	0.105
신청 소요기간(1주이내)				
1주~2주 이내	0.08	0.055	0.087	0.083
2주~1월 이내	-0.086	0.051	-0.040	0.076
1월~2월 이내	-0.376	0.053	-0.370***	0.079
2월 이상	-0.633	0.057	-0.610***	0.085
근속기간(월)	0.000***	0.000	0.000***	0.000
이직 전 임금(로그)	0.037	0.032	-0.020	0.051
소정급여일수(90일)				
120일	0.419***	0.039	0.493***	0.061
150일	0.665***	0.043	0.732***	0.066
180일	0.900***	0.047	0.873***	0.076
210일	0.427**	0.207	0.499*	0.281
N	26,432		11,692	
-2Log Likelihood	34928.88		15365.29	
R ²	0.063		0.060	

주 : 1)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

2) 모형 I은 30~39세 연령층이면서 남성의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 특성을, 모형II는 30~39세 연령이면서 학력수준이 고졸인 남성의 조기재취직수당 수급자 특성을 분석함.

자료 : 고용보험 DB.

3. 특별연장급여 수급자의 특성

누가 고실업시기에 특별연장급여를 받았는가? 노동시장에서 한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저학력자, 고연령자 등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남성, 고학력자, 청·장년층 등에 비하여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급여일 수만큼의 실업급여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재취업하지 못하여 고실업시기에 특별연장급여를 수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인지를 통계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4> 노동시장에서 한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저학력자, 고연령자 등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남성, 고학력자, 청년층 등에 비하여 특별연장급여를 수급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표 8>은 최초 실업인정일이 1998년 5월 15일~1999년 10월 31일인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특별연장급여 수급 여부에 대하여 로짓분석한 결과이다. 특별연장급여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표본은 각각 10% 임의추출한 것으로 개인적인 인적 특성과 이직 전 사업장 특성, 실업급여의 제도적 특성을 통제하여 분석한 것이다.

먼저 개인의 인적 특성 변수를 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의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계층별로는 30세 미만의 연령계층에 비하여 50세 이상 연령층의 회귀계수값이 가장 크고 다른 연령계층보다 상대적으로 수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30세 미만의 연령계층에 비하여 30대와 40대 연령계층의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과 연령 측면에서는 노동시장에서 한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과 고연령자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남성과 청년층 등에 비하여 특별연장급여를 수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4>가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력수준별로는 고졸자에 비해 초·중졸 이하의 저학력자의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4>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대와 대학 졸업자도 고졸자에 비해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여성 구직급여 수급자 중 대학원 이상 학력자의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은 반면 같은 학력수준의 남성은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직종별로는 사무직종 종사자의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농·어업 숙련근로자에 비해 높은 반면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수급 가능성은 오히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사무직종과 기능원 및 관련 직종에 종사한 여성 이직자의 경우 남성과는 정반대로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성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또한 이직 전 서비스·판매직종에 종사한 여성의 경우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산업별로는 농수림어업, 전기가스, 통신 등의 산업을 기준으로 할 때 제조업이나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등 모든 업종에서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남성의 경우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의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전 사업장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수가 많을수록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시근로자수가 30~99인 사업장에 비하여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낮을 뿐 그 이외의 모든 사업장에서는 수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직장 이직사유를 보면 개인 사정이 아닌 회사 사정으로 이직한 비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특별연장급여의 수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직 전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직 전 근속기간이 길수록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별로는 소정급여일수 30일인 집단에 비하여 소정급여일수가 60일, 90일, 120일인 집단의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이, 30세 미만의 연령계층에 비하여 30대 이상의 연령계층이, 고졸자에 비해 초·중졸 이하와 전문대·대졸자가, 직종별로는 사무직종 종사자가, 산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종사자가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으며, 또한 이직 전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이직 전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한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저학력자, 고연령자 등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남성, 고험력자, 청년층 등에 비하여 특별연장급여를 수급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 4>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표 8> 특별연장급여 수급자의 특성에 대한 로짓분석

	전 체		여 성		남 성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절편	2.706***	0.366	0.920	0.696	2.966***	0.507
여성	0.358***	0.024				
연령(30세 미만)						
30대	0.169***	0.030	-0.079	0.049	0.360***	0.040
40대	0.158***	0.035	-0.109**	0.066	0.393***	0.046
50세 이상	0.479***	0.043	0.644***	0.091	0.582***	0.053
학력(고졸)						
초, 중졸 이하	0.200***	0.031	0.225***	0.061	0.171***	0.037
전문대, 대졸	0.135***	0.023	0.180***	0.045	0.117***	0.028
대학원 이상	-0.137	0.088	0.470*	0.271	-0.210**	0.095
이직 전 직종(농어업숙련근로자 등)						
사무직	0.095*	0.052	-0.201	0.127	0.170***	0.058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0.011	0.051	-0.177	0.126	0.043	0.057
고위임직원·전(준)문가·기술공	0.075	0.053	0.042	0.139	0.082	0.059
서비스·판매직	0.026	0.060	-0.301**	0.137	0.127*	0.069
단순노무직	-0.110**	0.054	-0.219*	0.125	-0.112*	0.062
이직 전 기업규모(30~99인)						
30인 미만	-0.161***	0.027	-0.155***	0.050	-0.168***	0.032
100~299인	0.061**	0.030	0.074	0.057	0.042	0.036
300~999인	0.146***	0.033	0.225***	0.063	0.103***	0.039
1,000인 이상	0.190***	0.032	0.218***	0.060	0.128***	0.038
이직 전 산업(농수림어업, 전기가스, 통신 등)						
제조업	0.380***	0.031	0.356***	0.057	0.365***	0.038
건설업	0.361***	0.040	0.300***	0.089	0.367***	0.047
도소매, 숙박업	0.290***	0.041	0.317***	0.072	0.273***	0.051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111***	0.037	0.131**	0.067	0.090**	0.045
금융 및 보험	0.113***	0.042	0.243***	0.071	-0.025	0.055
비자발적 이직	0.255***	0.051	0.356***	0.085	0.194***	0.065
이직 전 임금(로그)	-0.201***	0.025	-0.081	0.050	-0.239***	0.029
근속기간(월)	-0.006***	0.000	-0.006***	0.000	-0.006***	0.000
실업급여 신청 소요기간(1주 이내)						
1주~2주	0.010	0.041	0.063	0.084	-0.005	0.047
2주~1월	-0.059	0.038	0.035	0.077	-0.089**	0.044
1월~2월	-0.059	0.040	0.069	0.080	-0.105**	0.047
2월 이상	0.002	0.041	0.079	0.079	-0.019	0.048
소정구직급여일수(30일)						
60일	0.603***	0.142	0.489***	0.163	0.735**	0.307
90일	0.589***	0.142	0.716***	0.164	0.525*	0.308
120일	0.285**	0.144	0.042	0.173	0.355	0.308
150일	0.071	0.149	0.010	0.193	0.109	0.311
N	52,615		16,855		35,760	
-2Log Likelihood	67088.54		20581.26		46226.60	
R ²	0.083		0.058		0.084	

주 : 1) ***는 1%, **는 5%,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

2)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표본은 56,197명으로 상정한 변수들의 결측값으로 관찰치가 52,615명임.

자료 : 고용보험 DB.

V. 결론 및 정책과제

본 논문은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 시행 과정에서 우선 누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비수급자와 비교해서 어떠한 특성에 있는 사람들인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실업을 당하지 않은 피보험자와 실업은 되었으나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비수급자에 비하여 노동시장에서 성, 연령, 학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한계근로자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연령계층별로는 30대 이하의 연령계층에 비해 40대와 50대 이상의 연령계층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자에 비해 중졸 이하의 저학력계층이 오히려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고, 전문대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고졸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졸 이상의 학력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고졸자보다 더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직종별로는 예상과는 반대로 단순노무직 근로자가 전문직 및 기술·기능직 근로자에 비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한계직종의 근로자보다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 직종에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전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으며,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근로자가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비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더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으며, 퇴직금을 수령한 이직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이직자에 비하여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고 청년층에 비하여 중장년층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예상했던 바다. 그러나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중졸 이하의 저학력계층보다도 고학력자인 전문대와 대학 졸업자들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더 높으며,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와 사무직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단순노무직보다도 더 높고, 이직 전 임금이 높을수록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으며, 퇴직금을 받지 못한 임시·일용근로자에 비하여 퇴직금을 받고 퇴직한 정규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이 주로 대기업과 금융산업에 취업하고 있는 고임금·고학력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한계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의 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조기재취직수당제도의 수혜자들을 보면 사회적 우위계층이 주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여성에 비하여 남성이, 연령계층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학력별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조기재취직수당의 수급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결국 조기재취직수당은 그 성격상 일반 구직급여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조기에 재취업이 용이한 젊고 고학력의 남성이 주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연 조기재취직수당이 모든 수급자들의 조기재취업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판단한다면 조기재취직수당제도가 없었더라도 조기에 재취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노동시장에서 우위에 있는 계층에게 주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조기재취직수당제도가 갖고 있는 특성에서 연유한 당연한 결과로도 볼 수 있지만 조기재취직수당제도가 사회적 한계계층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데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조기재취직수당제도의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행히 특별연장급여의 경우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이, 30세 미만의 연령계층에 비하여 30대 이상의 연령계층이, 고졸자에 비해 초·중졸 이하의 저학력자가 특별연장급여를 받을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으며, 또한 이직 전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이직전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특별연장급여 수급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한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저학력자, 고연령자 등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남성, 고학력자, 청년층 등에 비하여 특별연장급여를 수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누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가를 밝혀 주는 것으로서 향후 실업급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한계계층의 보호에 현행 실업급여제도가 더 많은 역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2004년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기능은 크게 보완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실업급여의 시행 과정에서 기대한 대로 효과가 나타나는데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본 논문은 그 시발점으로서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한국노동연구원, 『실업급여 수급자·비수급자 추적조사』, 2001. 11.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Johnson, George and Richard Layard, “The National Rate of Unemployment: Explanation and Policy”, The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 2, Eds: Orley Ashenfelter and Richard Layard, 1986.

abstract

Unemployment Benefits Recipients in Korea

Kil-Sang Yoo

This study analyses who receives unemployment benefits in South Korea. The findings suggest that men and the middle aged are more likely to receive Job Seeking Allowance than women and youths. But, workers who have a junior college or college education, managers and clerical workers, high-income workers, and full-time workers with retirement allowance are more likely to be the benefit recipients than workers with less than a junior high school education, unskilled laborers, low-income workers, and temporary workers without retirement allowance respectively. That male, young, and highly educated workers show higher probability of receiving Early Reemployment Allowance than their female, old, less educated counterparts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meaning socially privileged class generally receives Early Reemployment Allowance. Additionally, the findings also show that those who are older, educated less, and earned less prior to unemployment are more probable to receive Extended Benefit, suggesting Extended Benefit is usually granted to the underprivileged in our society.